

2026년도 하반기

감사관 회의

2026. 8.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I

하반기 반부패·청렴 중점 추진과제 5

1. 반부패 법·제도 강화로 공직부패 엄정 대응 7
 - 1) 청탁금지제도 규범력 제고 7
 - 2) 이해충돌방지제도 내실화 10
 - 3) 공직자 행동강령 실효적 운영 12
 - 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15
 - 5)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고도화 추진 16
 - 6) 지방정부 신고포상금 제도 정비 및 활성화 17
2.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 근절 18
 - 1)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강화 18
 - 2) 제도개선을 통한 불공정·고충 유발 요인 해소 20
3.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문화 확산 22
 - 1)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수준 향상 촉진 22
 - 2)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5
 - 3) 청렴윤리경영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지원 32
 - 4) 반부패 수공 유공자 포상 34

II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제도 안내 35

1.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행위기준 및 유의사항 37
2. 청탁금지법 주요 행위기준 및 유의사항 53
3.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 및 유의사항 59
4. 기타 안내사항 67

[참고자료] 73

1.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 운영 일정 75
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 이러닝 주요 과정 소개 76
3.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개발 교육 콘텐츠 주요 목록 80

[붙임] 83

1.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 요약표 85
2. 부서별 업무담당자 88

I

2026년도 하반기 반부패·청렴 중점 추진과제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ww.acrc.go.kr

1 청탁금지제도 규범력 제고

- ◆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춘 청탁금지법령 개정 추진,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태점검·교육 등으로 반부패 행위규범의 규범력 제고

□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적극 대응 국정과제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신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직자 처벌 강화*,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벌칙 수준 상향

* (현행)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법률 개정내용

- (민간대상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인사·협찬 등 10가지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
- (예외사유) 민원·입법·예산 및 일반 행정업무 수행 등 공직자등의 직무활동이나 민간부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추가
- (위반시 제재) 현행 청탁금지법상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청탁금지법령 개정 국정과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외부강의료 상한액을 1시간당 40만원, 최대 60만 원에서 1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향*('26.6.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일반 공직자와 동일수준 → (변경) 대학교수, 교직원 등과 동일수준

【참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대상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출연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
-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총 48개 기관, 약 30,000여 명 대상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제도운영 실태점검」으로 법 집행력 강화

-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내역, 자체 교육 현황 및 청탁 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전반적인 제도 관리 현황을 점검(1~8월)
- 기관에서 제출한 사건처리 중 위반행위자 과태료 통보 누락 등 부적절한 신고처리 사례 발굴 및 해당 사례 시정조치 통보 및 이행 여부 관리

【참고】 '25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시정조치 사례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세트 약 30만원을 수수**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수자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으나,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을 관할법원에 하지 않음
☞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금품 제공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통보**
-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계약 상대방인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약 30만원을 제공받은 사건**에서 공직유관단체는 관할법원에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을 각각 진행하였으나,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지 않음
☞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금품 제공자 소속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통보**

□ 내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 행위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법 오인으로 인한 위반자 발생 방지 및 긍정적 법 인식 확산 도모
- 금품·향응 등 주요 취약시기별*로 빈발질의, 위반유형 등에 대한 안내를 선제적으로 실시
* 설·추석 명절, 학교 입학·졸업, 공직선거, 연말·연시 등 금품수수 빈발 시기
-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을 통해 위반사례, 해석기준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예방활동 전개(수시)
- 청탁방지담당관 등 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과태료·징계 사례, 신고 처리 방법, 우수사례 공유 등 **맞춤형 교육 실시**(수시)
※ 기관 유형별 청탁방지담당관 및 감사·윤리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간담회 등

□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계기 인식개선 등 도모

- 청탁금지법 시행('16.9.28.) 10주년을 맞아 전국민 대상 경험 사례를 공모,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규제하는 나쁜 법'이 아닌 '우리 삶을 좋게 만든 법'이라는 인식 개선 추진('26.7.~'26.8.)
- 시행 10주년 계기 토론회 개최를 통해 그간의 성과 회고 및 청탁 금지제도의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9.14, 세종컨벤션센터)

□ 공직자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 실태 점검

-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주차료를 상시 면제하는 등 특혜·특권성 편의 제공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19.6., '22.8.)
-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 이용에 대한 특혜·특권성 편의 제공에 대한 실태 점검 예정

[협조 요청 사항]

-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홍보 적극 실시(전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성과·우수사례, ▲설·추석, 학교 입학·졸업, 연말연시 등 부패취약시기별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자료(카드뉴스, 홈페이지 배너 등) 배포 및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 안내 등 홍보 협조(수시)

2 이해충돌방지제도 내실화

- ◇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상 나타난 사각지대를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원 및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 이행력 제고

□ 이해충돌방지 행위규범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 고위공직자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 **국정과제**
 - 현재 기관장 재량사항인 소속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
 - ※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는 사항은 제외
 -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고위공직자에게 과태료 부과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제출·확인 의무 신설 **국정과제**
 - 고위공직자 등이 가족이 대표자인 업체 등 수의계약 제한 대상 정보를 임용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
 - 공공기관 계약 업무 담당자가 고위공직자 등이 제출한 정보, 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통해 수의계약 제한 대상 여부 확인 의무화

【참고】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추진 경과

- 기존 개정안 법제심사('26.6월~) 과정에서 수의계약 제한 의무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재입법예고 추진
- '26.10월 정부안 국회 제출 추진

□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한 운영 지원

- 각급 기관 반부패 행위규범 제도운영 현황 조사 실시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주요 행위 기준에 대한 ‘공공기관 제도 운영현황 조사’ 실시(8~12월)
 - ※ 운영현황 조사 관련 온라인설명회 실시 완료(8.11.)
- 지방정부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모니터링
 - 지역사회와 연계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일부 지방의회의 자체 실태점검 실적을 모니터링
 - ※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기관의 청렴도평가에 반영(10월~)

□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 기관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이해충돌방지법 직접교육*(연중) 및 빈발 질의·위반 사례 기반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배포(~12월)
 - * 각 기관에서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강의 관련 지원 요청 가능
- 법령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분기별)
 - * 주요 위반 사례 중심 ‘한 눈에 보는 이해충돌 사례 ZIP’ 카드뉴스 및 쇼츠영상

[협조 요청 사항]

-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조사 자료 제출 협조(전 공공기관 8월)
- 이해충돌 방지제도 자체점검 등 이행 노력 전개(전 공공기관, 연중)
 - 기관별 자체점검 실적이 청렴도평가에 반영되는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점검 실적 제출 협조(해당기관, 10월)
- 이해충돌방지법 법정 의무 교육 이행(전 공공기관, 연내)
 - 소속 공직자들이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지원 요청

3 공직자 행동강령 실효적 운영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 유도 및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행동강령 규율 강화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기준 강화

- (**국정과제** 적법·타당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 신설 추진) 반부패·청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에 맞추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
 - 직무의 적법·타당한 수행 및 소극적인 직무행태의 금지 등 행동강령의 규율사항을 확대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
 - ※ 제8조제2항 직무의 적법·타당한 수행 및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인 직무행태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 신설되는 행위기준 위반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및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제출, '26.7월)
- (**국정과제**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하급자가 사비로 순번을 정하여 상급자에게 식사 제공 등 잘못된 공직 관행(소위 '간부 모시는 날')을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 (집중신고기간 운영) 잘못된 공직관행 근절 및 공직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집중홍보 신고기간 운영('26.7.~8.)
 - (신고사건 처리) 일선 공직현장의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행동강령 이행실태점검을 통해 잘못된 공직관행 개선

□ 행동강령 운영기관에 대한 상시 이행실태 점검체계 구축

○ 부패 취약시기 집중점검 및 즉각 대응으로 공직기강 해이 예방

- (부패취약시기)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품·선물 수수, 알선청탁 등 집중 점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기관 대상

【주요 적발사례】 : 해당기관에 통보 후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 ✓ 군청 과장급 공무원이 하급자로부터 시가 48만원 상당의 한우·과일 선물세트 수수
- ✓ 군청 공무원이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시가 42만원 상당의 한과 선물세트 수수

- (수시점검) 지자체장 등 언론보도사건 등을 반영해 행위규범 위반사항을 수시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슈 즉시 대응 및 관련기관 전파

※ 기관장의 부당행위 및 사적노무 요구, 직무관련자 경조사 통지 등 현안사항 발생 시 긴급 현지점검 실시

○ 하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청렴도 하락 기관 실태점검) 일선현장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외부 강의 미신고 등 조직 내 잘못된 공직관행 등 근절
- (신규 공직유관단체 운영지원) 공직유관단체 지정 3년차 기관의 행동강령 조기 정착 지원 및 소속 임직원의 공직자 인식 강화

[협조 요청 사항]

-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조속히 반영(전 공공기관)
 -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이 완료될 경우 ① 자체 행동강령 개정 전문, ② 신·구 조문대비표를 공문으로 송부
 - ※ 위원회에서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은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 시정·권고사항 신속히 반영
- 위원회에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이행점검 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해당 공공기관)
 -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이첩·송부시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완료 후 위원회로 조사결과 통보 등 협조
 - ※ 특히, 징계, 환수시효 임박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조치
 - 행동강령 위반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해당 관계기관은 적절한 조치, 제도개선 검토 등 협조
- 기관별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자율적 이행 노력(전 공공기관)
 -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 대상 직무상 부당행위 금지,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최근 국민신문고·청렴포털 행동강령 위반 상담사례】

- ✓ 인사팀장이 기관장 송별회에 발생한 비용을 송별회 참석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가
- ✓ 팀원 전체가 허위출장으로 부당 수령한 여비를 상시적으로 모아 회식에 사용하고 부서장 식사 대접에 사용

-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자율적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활동 적극 전개
 - ※ 필요 시 점검실적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숙지 및 안내의 적시성 확보를 통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을 예방하고 비위면직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제도 개요

- (대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제한 기간)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 (제한 기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발생현황 파악

- (대상)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현황
- (방식) 매 반기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을 통해 입력

□ 취업제한 실태점검 및 위반자 제재

- (실태점검) 취업이 확인*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 검토를 위해 업무내역 등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요청하여 점검
*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을 통해 위원회가 비위면직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
- (위반자 제재)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 강구·고발 조치요구를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에 요구

[협조 요청 사항]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 활용(상시, 전 공공기관)
* '25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25년 개정본 공개
- 취업제한제도 즉시 안내 및 대장 관리(수시, 전 공공기관)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현황 입력기한 준수(~8월, 전 공공기관)

5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고도화 추진

◇ 국민이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고, 충분히 보상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고자 보호·지원 법제 고도화

- **(보호기준 강화)** 부패신고, 공익신고 등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령별 보호 수준의 차이 해소 **국정과제**
 - (부패방지권익위법) 보호조치의 이행력과 불이익조치 추정사유, 비밀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으로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조치 신청·결정 대상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수준으로 확대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26.3.12.)
 - **(보상 확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불법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충분히 보상하여 신고 활성화 **신규추진**
 - (지급기준 개선) 재정 수입회복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률이 낮아지는 구간제 비율을 변경하여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 지급

* (현행) 수입회복액 규모에 따라 4~30% 지급 → (개선) 수입회복액의 최대 30% 지급

 - (상한폐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도 공익신고와 동일하게 보상금 상한(30억원) 폐지*
- ※ (일정)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7.14~8.24.),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9월 예정)

[협조 요청 사항]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 개최시 적극 참여(해당기관)
-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관련 교육영상 배포시 기관별 정책고객·이해관계자·SNS 등을 통한 확산·배포 협조(해당기관)

6 지방정부 신고포상금 제도 정비 및 활성화

◇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활용 확대 방향에 맞춰 지방정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내실화 지원

□ 권익위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활성화

- (개요) 부패·공익신고로 공익의 증진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추천 또는 권익위 직권으로 최대 5억원의 포상금 지급 가능
 - (운영) 공공기관에 상·하반기 2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며, 하반기에는 9월초 공문을 통해 추천 요청 예정
 - 하반기 지방정부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권익위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 (절차) 포상금 대상자 추천 → 보상심의위 심의·의결 → 권익위(전원위) 의결

□ 지방정부 신고포상금 표준 조례안 배포

- (개요) 지방정부·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1,863개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표준 조례안 배포 예정(9월 중)
 - (내용) 지방정부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공통 요소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선택적 요소를 모두 반영해 제도 내실화 지원
 - 각 기관은 신고포상금의 성격 및 기관의 상황을 반영해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도 정비 추진(하반기)
- * 대상자 선정 요건 및 절차, 지급방식, 제도의 평가 및 관리 등 운영·관리 사항

[협조 요청 사항]

- 자체 사전검증 후 권익위 포상금 대상자 적극 추천(9월, 전 공공기관)
- 신고포상금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소관 신고포상금 제도 정비(하반기, 전 지방정부·교육청)

1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강화

◇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 채용비리 적발과 제도개선 등 채용비리 예방을 통해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인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점검·관리 강화

- (비공무원) 행정기관 비공무원(기간제·공무직 등) 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9월)
 - * '23.3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자체 규정화 외 비공무원 채용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함께 권고한 바 있음
 - (대상)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비공무원 채용 건 중 감사 대상은 기관 규모 및 성격을 감안하여 자체 선정
 - (방법) 기관별 운영중인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후속조치)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등 실시
 - *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조치
- (산하기관)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25년 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 점검(~10월)
 - (대상) 필수조사* 608개 기관 및 재량조사** 894개 기관
 - * 재경부·행안부 주관 '경영평가' 대상,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시 '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 발생기관 및 '25년도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 **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시 적발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채용절차 위반이 지적된 기관 등
 - (방법) 감독기관 조사와 위원회 주관* 조사 병행 실시
 - * 위원회는 실태조사에서 반복적발된 기관(10개),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7개), 감독기관의 협조요청 기관(3개) 등에 대해 직접 조사 진행중
 - (후속조치)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등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자체감사 실시 협조(중앙·지자체·교육청)
 - 기관 성격에 맞게 감사대상 자체 선정 후 기관별 '비공무원 공정 채용 기준'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실시
- '26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적극 협조(감독기관)
 - 산하 공직유관단체 대상 조사 실시 및 결과 회신(~10.23, 기한엄수), 전수조사 후속조치(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이행
 - 위원회 직접 조사 대상 기관(20개)의 경우 감독기관의 별도 조사는 불필요하나,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후 그 결과를 위원회 통보 요망(~10.23)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협조(해당기관)
 - 피신고기관인 경우, 자료제출·현지조사 등 요청에 적극 협조
 - 감독기관 등 조사기관인 경우, 신고자 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 실시 및 위원회로 조사결과 통보 등

2 제도개선을 통한 불공정·고충 유발 요인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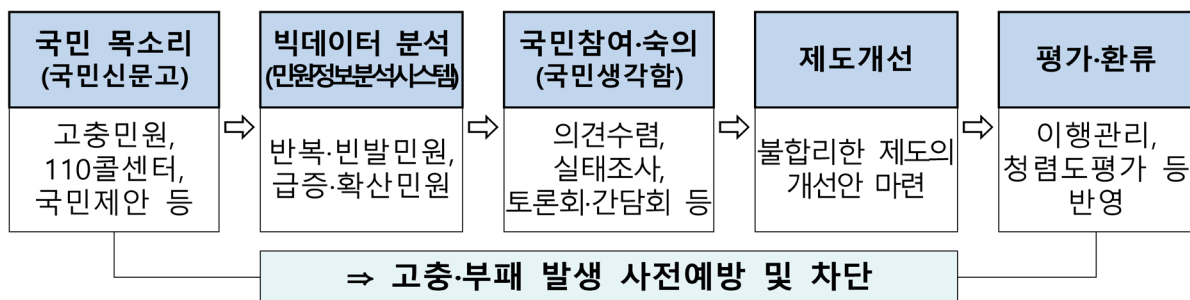
- ◇ 부패방지과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지속적인 이행관리**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정비해 일상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확산에 기여

□ 제도개선 업무 개요

-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 개별 민원 처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원인인 제도자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권익 증진

※ '26.7월까지 총 14건의 제도개선 권고 완료

< 제도개선 업무 추진 절차 >



【'26년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추진 과제(안)】

-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
 -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선,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제도개선 검토
- 전입자 생활정보 사전안내 강화 방안
 - 전입신고 단계에서 전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 생활정보를 모바일이나 책자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인상 대책 제도개선
 - 자격 공인 이후 응시료 인상 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인·재공인 심사 시 응시료 평가 배점 확대 및 적정성 심사 강화 등 제도개선 검토

□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

- (맞춤형 관리) 이행 저조기관에 대한 맞춤형 이행관리(수시)
 - 미이행 과제의 조속한 이행방안 협의 및 대체방안 논의를 위해 기관별 컨설팅 실시(~10월)
 - ※ 권고 이행률이 저조한 기관은 컨설팅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컨설팅 추진
 - 전수점검 자료 미제출, 제출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한 현장 이행실태 점검 실시(11월~)
- (기관평가 지표 반영) 권고과제의 이행여부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청렴도 평가 등에 반영하여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유도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 분야 제도개선 과제 이행 여부 등 평가
 - ※ 실적 확인 및 정정기간(~8.17.) 이후 최종 실적 확정 공지 예정(8.28.)
 - (청렴노력도) 부패 분야 제도개선 과제 이행 여부 등 평가
 - ※ 9월~11월 실적 제출 및 평가 진행 예정

[협조 요청 사항]

-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조회 시 기한 내 제출(전 기관)
- 제도개선 권고 조치기한 도래 후 1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전 기관)
- 기관평가 실적 제출 시 이행내용 등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근거자료 충실히 제출(전 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기관)
 - ※ 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추천

1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수준 향상 촉진

◇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및 반부패 활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청렴문화 확산 도모

□ 종합청렴도 평가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공공부문 청렴도 제고

- 종합청렴도 평가영역별(3개) 평가일정을 준수하여 원활한 평가 진행
 - (청렴체감도)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외부 민원인, 내부 공직자 등 대상으로 부패인식·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8~11월)
 - * 전화·온라인(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조사
 - (청렴노력도) 기관별 반부패 노력 평가지표 이행실적 취합(9.30~10.2) 및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정량·정성평가 실시(~12월)
 - * 정량지표 1차 평가결과에 대해 기관 이의신청·검토(11월)
 - (청렴도감점)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으로 반영(~11월)

【참고】 청렴도 감점 영역

-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법령에 규정된 의무 미이행 행위 등을 평가에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 평가과정에서 호의적 답변 유도, 각종 자료 누락·조작, 지연제출 등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

- 기관 제출자료의 정확성, 신뢰도 저해 행위 여부 등에 대한 기관 현지점검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9~11월)
 - * 설문조사 명부·반부패 노력 평가지표 실적보고서 등 기관 제출자료의 정확성, 호의적 응답 유도·표본 관리 행위 및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집중 점검

□ 연내 평가결과 발표를 통한 각급기관 반부패 노력 지원 및 환류 강화

- 기관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대국민 공개하며, 기관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자율적 반부패 시책 추진을 위해 세부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별도 제공(12월 예정)
 -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대국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필요 시 국무회의 등 보고 예정
 - * 평가대상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결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함
-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해 우수시책 사례를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반부패 정책 국외 교육훈련 등 기회 제공

[협조 요청 사항]

- '26년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 등 협조(평가대상기관)
 - 설문조사 명부, 부패사건 징계자료 등 보완(9~11월)
 - 하반기 현지점검 협조(9~11월)
 - 부패사건, 언론보도 사항 등 확인·소명(~11월)
- '26년 청렴노력도 평가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일정 준수(평가대상기관)
 - '26년 청렴노력도 실적 제출(9.30~10.2)
 - '26년 청렴노력도 정량지표 1차평가 이의신청(11월초 예정)
- 기관별 평가결과 공개 등 후속조치 이행(평가대상기관)
 - 결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12월~), 공개실적은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27년)

□ 종합청렴도 부진기관에 대한 청렴도 향상 노력 지원('27년도 청렴컨설팅 추진)

- (청렴컨설팅 개요) 종합청렴도 부진기관^{4~5등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수기관^{1~2등급}의 우수 시책 등을 벤치마킹해 자체 청렴도 수준 개선 지원

- ▶ (청렴컨설팅 신청 방법)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별 사전 협의를 통해 그룹* 구성후 그룹 단위로 위원회의 희망·수요조사 기간내 신청

* 그룹 구성 : 멘토 1개 기관 + 멘티 2개 기관(그룹구성은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구성 가능)

<신청 자격>

- 멘토 : '26년 종합청렴도 1~2등급 기관, 단 '26년 청렴컨설팅 '멘토'로 참여한 기관은 선정 제외 (컨설팅 참여 멘토는 차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시 청렴노력도 분야에 가점 부여)
- 멘티 : '26년 종합청렴도 4~5등급 기관, 단 '26년 청렴컨설팅 '멘티'로 참여한 기관은 선정 제외

[2027년 청렴 컨설팅 주요 일정(안)]

착수 회의	⇒	청렴도 저조원인 파악 (반부패 역량설문)	⇒	1차 자문 회의	⇒	자율 회의 (1차)	⇒	2차 자문 회의	⇒	자율 회의 (2차)	⇒	결과 보고서 제출
'27.1월		1월		2월~3월		3~4월		4~5월		5~6월		9.30

※ 멘티기관 중 전년도 종합청렴도가 5등급 기관 등 7개 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직원·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심층진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심층진단분석 별도 진행

- ▶ (청렴컨설팅 그룹 선정) 신청 그룹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최종 14개 그룹 선정
 - ※ 최종 대상기관 선정 심의시 '그룹' 단위로 심사하므로 그룹 매칭시 신중한 협의 필요
- ▶ (청렴컨설팅 효과) '25년 컨설팅 참여한 27개 멘티중 18개 기관(66.7%)의 청렴도 등급 상승
 - ※ 청렴도 등급 상승 18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우수등급(1~2등급)으로 대폭 개선
- ▶ 기타 상세내용은 '26년 12월말 컨설팅 참여 희망·수요 조사 관련 별도 공문 발송 예정
 - ※ 수요조사 기간 :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다음날~'27년 1월 초

- ('27년도 청렴컨설팅 수요 조사) '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직후 '27년도 청렴컨설팅 참여 수요조사 실시

[협조 요청 사항]

- '27년도 청렴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수요조사 반드시 신청
 - ※ '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다음날 '청렴컨설팅' 1차로 희망 조사(공문 발송)후 희망기관 리스트를 첨부하여 수요조사(1주일) 실시
 - ※ 수요조사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경우, 컨설팅 참여 불가

2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 교육대상별·업무분야별 맞춤형 청렴교육, 강사양성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각급 기관 자체교육 지원, 국민권익보호 분야 교육 확대로 공직자의 역량 강화

□ 교육대상별 특화 청렴교육 제공(참고1 교육일정 참조)

- (대면교육 의무자)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대면교육 이수가
의무인 신규·고위·승진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과정 운영

과정명	고위 공직자 과정	신규 공직자 과정	승진 공직자 과정
교육내용	고위직이 숙지해야 할 반부패 법령 교육 및 조직 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토론 등 진행	신규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정책 등을 게임·현장학습 등을 통해 재미있게 습득	반부패 정책·법령교육과 공연 등 참여형 교육으로 승진자의 청렴 역량 강화
일정	3회(9.18, 10.7, 10.20)	2회(10.21~22, 11.26~27)	2회(10.30, 11.13)
교육대상·인원	고위 공직자(회당 40명 내외)	2년 이내 최초 임용된 신규자(회당 40명 내외)	2년 이내 승진한 공직자 (회당 40명 내외)

- (변화대응형) 청렴민감성 등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청렴감성지수를
높이고, 가치충돌 시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청렴리더십을 향상

과정명	청렴감성지수 향상	청렴리더십
교육내용	청렴4구성요소(민감성·판단력·동기화· 수행력)에 기반한 청렴역량 향상	실제 공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치 충돌 사례에 기반하여 전략적 의사결정과 위기관리 역량 강화
일정	1회(11.4~11.6)	1회(10.28)
교육대상·인원	각급기관 공직자(회당 40명 내외)	각급기관 중간관리자(회당 40명 내외)

○ (계약분야) 부패취약분야 대상 특화교육으로 선제적 부패대응 역량 강화

과정명	계약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교육 내용	계약 분야 맞춤형 반부패 법령 교육 및 사례 분석, 전문가 초빙 강의
일정	1회(9.8)
교육대상·인원	계약담당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회당 40명 내외)

○ (청렴업무 담당자) 각급 기관 자체 청렴교육을 지원하고,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의 반부패 법령·정책 학습 지원

과정명	내부강사 양성과정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
교육내용	청렴·감사업무 담당자의 청렴 전문역량 향상을 위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적 학습 및 최신 동향 교육	
일정	2회(8.25~8.27, 11월 예정) * 실시간 온라인	1회(8.31~9.4)
교육대상·인원	감사·청렴업무 담당 공직자 (회당 300명 내외)	감사·청렴업무 담당 공직자 (회당 40명 내외)
비고	과정 수료 후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내부강사 자격 부여	감사·청렴업무 담당자에게 한해 교육 이수 시 내부강사 자격 부여

○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리더·주민대표로서 신뢰받는 지방의회 정립

과정명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
교육 내용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청렴의 중요성 인식 및 청렴 리더십 향상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 이해 제고
일정	31회(9월중)
교육대상·인원	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 및 사무처 직원(인원은 기관별 상이)

- **(방문교육)** 매년 증가 추세인 청렴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습자 접근성과 시의성을 고려한 현장방문 교육운영

과정명	청렴라이브	찾아가는 권역별 권익·청렴교육
교육내용	반부패·청렴특강과 문화·예술 공연을 결합한 콘서트 형식의 찾아가는 방문교육	교육원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고위 공직자 등의 교육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청렴·권익교육
일정	구체적인 교육일정 및 세부 내용은 해당 기관과 협의 후 결정(현재 모든 기관 선발 완료) * 9월 24개 기관, 10월 5개 기관, 11월~12월 3개 기관(예정)	2회 (수도권 9.16 전라권 4분기 예정)
교육대상 · 인원	기관장, 고위공무원 포함 전 직원 (매회 300명 내외)	각급기관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 및 지역거점 공직자(매회 250명 내외)

□ 강사 양성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각급 기관 자체교육 지원

- **(청렴교육 강사제도 운영)** 각 공공기관의 자체교육 활성화 및 양질의 청렴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내부강사·전문강사 양성

- 기관 업무 이해도가 높은 청렴·감사업무 담당자를 내부강사로 양성, 수료 시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가능*

* 「내부강사과정」 교육 수료·평가 또는 「공직자 청렴역량 향상과정」 교육 수료 시 자격 인정

- 반부패 법령·지식 및 강의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전문강사 양성
과정 수료·필기시험·강의시연 평가 등을 통해 선발·양성('26.7.31. 기준 총 447명)

※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전문강사 대상 최신 반부패 동향, 강의기법 등 연수교육 과정 운영

과정명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반부패정책·법령)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강의역량향상)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교육내용	반부패 주요 법령 조문 분석 및 사례, 판례 학습을 통한 전문 지식 함양	스피치, 교수법, 강의계획서 작성 및 강의안 작성법 등 강의역량 향상	최신 법령 및 사례, 스피치, AI활용 강의안작성스킬, 강의 노하우 등 강의역량 향상
일정	1회(9.14~9.17)	1회(11.17~11.18)	1회(11.24)
교육대상 인원	공직자 및 비공직자 (회당 50명 이내)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필기시험 합격자 (회당 30명 이내)	청렴교육 전문강사 (회당 40명 이내)
비고	반부패 업무경력 등 서류 심사를 통해 교육생 선발		

- (권익강사 신규양성) 공직자 대상 국민권익보호 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 확대를 위해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설

과정명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규추진
교육내용	· 민원제도개관, 고충민원 분야별 해결사례 · 특이민원 대응방법, 집단민원 조정기법 · 공공갈등의 이해 및 갈등 관련 이론 · 교수설계기법 및 강의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전략
일정	1회[26.8.24~8.27. 최초 교육, 9월초 강의시연평가 이후 강사 명단 공개(교육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각급 행정기관에 공문발송)]
교육대상 인원	공직자 및 비공직자(회당 40명 내외) *민원·갈등관련 업무경력 등 <u>서류심사</u> 를 통해 교육생 선발

- (콘텐츠 보급) 기관 자체 청렴교육 활용을 위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개발 이러닝 과정 운영 및 교육·영상 콘텐츠 등 적극 배포
- '나라배움터'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28개 과정 이러닝 과정 운영(2월~)
 - ※ 매월(2~11월) 1일~25일경 운영(구체적인 이러닝 과정은 참고2 참조)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콘텐츠 확인 및 활용 가능
 - ※ 구체적인 콘텐츠 내역은 참고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개발 교육 콘텐츠 목록) 참조

□ **국민권익보호 분야 전문교육 확대·강화**(참고1 교육일정 참조)

- (과정 확대·개편) 공직자의 국민권익보호 및 민원갈등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권익 분야 전문교육 신설·확대 추진 **신규추진**

과정명	권익구제·갈등관리	집단·특이민원 대응	갈등조정담당관	행정심판
교육내용	국민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민원처리 업무 역량강화 및 갈등관리 역량강화	실무자의 민원처리 역량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갈등조정담당관의 집단·특이민원 및 공공갈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 증진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한 재결절차 및 처리과정 전문성 제고
일정	3회 (9.9~9.11, 10.14~10.16, 11.11~11.13)	2회 (10.1, 11.6)	3회 (8.27, 10.20, 11.25)	2회 (9.4, 12.4)
교육대상 · 인원	민원·갈등 담당자 (회당 40명)	민원·갈등 담당자 (회당 300명)	갈등조정담당관 (회당 100명)	행정심판 담당자 (회당 100명)

과정명	AI·빅데이터 활용 민원처리실습	권익청렴의 이해	집단갈등 문제해결
교육내용	민원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AI·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권익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권익의 중요성을 인식	갈등 관련 사·리옌를 제시하여 각 입장 별 역할극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갈등조정 실습 진행
일정	1회 (10.1)	1회 (11.20)	1회 (10.27~10.28)
교육대상 · 인원	민원·갈등 담당자 (회당 30명)	공직자 일반 (회당 80명)	민원·갈등 담당자 (회당 40명)

□ 법정업무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제고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는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 필요**
- **신규자와 승진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고위직(기관장 포함)은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의거, 대면교육 이수 대상자로 지정**
-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실적 점검
- 부패방지교육 실적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및 이행계획서 징구**

- (**'25년도 점검 결과**)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준수 여부 관련, 전년 한해 동안의 2,242개 공공기관의 '25년 한내 교육운영 실적 점검 완료

구 분	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지원청포함)	국공립 대학	공직 유관단체
			광역	기초	광역	기초			
기관수	2,242	51	17	226	17	226	193	59	1,453

- 전체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의 교육 이수율은 상승한 반면, 신규·승진자 이수율은 소폭 하락

<'25년 공공기관 유형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상승, ▼하락, 단위:%)

구 분	전체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국공립대	공직유관 단체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전체공직자 (증감, %p)	96.7% (▲0.7)	97.6% (▲0.9)	94.6% (▲1.0)	93.3% (▲0.7)	94.2% (▲0.9)	94.3% (▲0.9)	99.1% (▲0.3)	83.0% (▲9.3)	97.0% (▲0.2)
고위공직자 (증감, %p)	97.8% (▲0.7)	97.5% (▲2.3)	98.2% (▲0.6)	98.7% (▲0.2)	99.8% (▲2.1)	97.5% (▲1.2)	99.8% (-)	93.8% (▲10.0)	97.6% (▲0.7)
신규·승진자 (증감, %p)	92.6% (▼0.2)	91.1% (▼4.5)	91.0% (▼0.8)	89.9% (▲1.4)	89.4% (▼1.3)	95.0% (▲2.6)	98.3% (▲1.0)	86.8% (▲6.0)	93.8% (-)

- 점검결과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부진 기관(130개)의 관리자 대상 특별 교육(7.8, 7.13) 및 이행계획서 징구 완료

* 부패방지교육 운영 부진기관 기준

- ① 전체공직자 교육 이수율이 75% 미만인 기관
- ②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이수율이 80% 미만인 기관
- ③ 신규·승진자 대면교육 이수율이 80% 미만인 기관
- ④ 기관의 교육실적을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 (**'26년도 교육실적 집계·제출**) 기관별 '26년도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적을 집계('26.12.31기준)후 '27년 2월까지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실적 및 증빙자료 입력

[협조 요청 사항]

- 매월 집합교육 안내 및 교육생 모집 시 소속기관 통보 및 적극 홍보(전 공공기관) ※ 교육 1개월 전 공문을 통해 교육 과정 및 교육생 모집 안내
-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고위직·신규자 등) 및 교육 희망자에 대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 파견 등 협조(전 공공기관)
- 방문교육 운영 시 시설 준비 등 협조 요청(해당 기관)
- 자체 교육 시 청렴교육 강사(내부강사·전문강사) 적극 활용(전 공공기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전문강사 검색 및 강의 요청 가능
- 자체 교육 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 콘텐츠 활용(전 공공기관)
※ 교육콘텐츠는 교육원 홈페이지·유튜브(권익비전)을 통하여 활용하거나, 교육원에 공문 발송(수신처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운영과)을 통하여 요청
- 소속 공직자 대상 '26년도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관리 철저
※ 부패방지교육 상세 운영은 '26.1월 배포한 '2026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 참조(위원회 누리집 '부패방지자료실'에도 등재)

3 청렴윤리경영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지원

- ◇ 공기업 등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 지원 및 청렴시민감사관 역량강화를 통한 각급 기관 자율적 반부패·청렴활동 지원

□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 지원

- 국내외 반부패 규범 강화, ESG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에 공기업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지원
 - * 청렴윤리경영 CP: 공기업 등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예방·탐지·개선하도록 하는 시스템 및 활동(Compliance Program)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지원 및 전문가 매칭, 규모·산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실시(공기업·민간기업 등 20개 기관)
 - 청렴윤리경영 지원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개정안 국회 제출 '26.6.4.) **국정과제** **신규추진**
 - ※ 주요 개정사항 :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마련, 청렴윤리경영 진단 업무 수행 근거 추가, 공공기관 부패예방 운영체계 독립성 보장 책무 신설 등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통해 최신 국제 반부패 규범 및 ESG 동향, 국내·외 윤리경영 사례 등 정보 제공(월 1회)
 - ※ 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정보 → 대외협력 →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게시

□ 각급 기관 청렴시민감사관 도입·운영 지원

- 청렴시민감사관* 및 실무자 대상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워크숍 개최(중앙·지자체·공직유관단체 대상 연 3회)
 - * 청렴시민감사관 :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를 감사·조사·평가하기 위해 외부에서 위촉된 자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감사 요청·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객관적인 외부통제 활동 수행
 - ※ '26년 청렴노력도 평가대상 기관(229개) 중 228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중

- 신규 도입 희망기관, 운영 미흡기관 등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수시)
 - ※ (주요내용) 제도 운영 관련 가이드 라인 제시, 직무 교육 지원 등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수시)
 - ※ (대상) 2025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우수 기관 등

[협조 요청 사항]

-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의 청렴윤리경영 CP 자율 도입 추진 독려(기관 자율)
 - ※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23.6월, 개정본) 참고
: 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정보 → 대외협력 →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게시
-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및 간담회, 우수사례 발굴 적극 참여 협조 (전 공공기관)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맞춤형 컨설팅 수요 제출(희망 기관)

4 반부패 수공 유공자 포상

◇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민간분야 등 사회 각계의 반부패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청렴도 향상 도모

□ 기본 방향

-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반부패 공적을 거둔 일반국민, 공직자 등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포상의 권위와 영예성 제고
- 일반국민,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민·관의 각 분야별 유공자를 망라하여 포상하되, 가급적 민간분야 위주로 포상

□ 포상 개요

- (추천대상)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또는 공적이 큰 일반국민·공직자·민간기업 임직원 등
- (선정기준)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요인 개선 및 청렴문화 정착 등 개선효과, 활동기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절차) 후보자 추천·접수(11월말) → 서류심사 및 공개검증(1월중) → 위원회 공적심사(1월말) → 정부포상 결정·포상(2월말)
- (포상규모)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권익위원장 표창 등
※ '25년 반부패 수범 유공 포상 : 총 18점(훈장1, 포장1점, 대통령2, 국무총리4, 위표10)
- (포상시기) 매년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협조 요청 사항]

- 소속 기관·단체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기한(11월말) 내 추천
※ 11월 중순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예정
- 특히, 민간분야 등 사회 각계의 숨은 반부패 유공자가 적극 발굴·추천될 수 있도록 협조

II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제도 안내 (주요 법령별 행위기준 및 유의사항)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ww.acrc.go.kr

II-1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행위기준 및 유의사항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행위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공공기관) 국회, 법원, 선관위, 감사원, 공수처, 인권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신고·제출 의무 (5가지)	1.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회피·기피(제5조)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및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7개 업무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는 임용일(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음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공직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제한·금지 의무 (5가지)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9.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10.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제14조)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고위공직자 적용 주요 행위기준 안내

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임기 개시 후 기한 내 제출)

- **(제출의무)**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제출의무자)**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포함
- **(제출사항)**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의 업무 활동 내역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 제출 사항
① 법인·단체에 재직할 경우	기관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②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③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 **(제출기한)** 임용일,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기한
 ※ (예시) '26.6.4.(목) 임기 개시한 경우, '26.7.6.(월)까지 제출
 '26.7.1.(수) 임기 개시한 경우, '26.7.31.(금)까지 제출
- **(제출대상)**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기관장이 제출 의무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 **(제출방법)**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 또는 서면*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상 서식 활용[붙임1]
 ※ **제출할 내역이 없는 경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없음 확인서' 제출[붙임2]
 ※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재선한 경우에도** 이번 임기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민간 업무활동 내역이 있는 경우 내역서를 제출하고, 내역이 없는 경우 내역없음 확인서를 제출
 ※ 소속기관장은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공공기관장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 사항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
- **(공개)**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 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나. 해당 시 신고 (상시) ※ 소속기관장은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공통)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법 제5조)

- (의무) 인·허가, 심사, 평가, 계약, 채용 등 법 제5조제1항의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가족, 재직했던 법인 등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직무수행의 일시중지명령, 직무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 중 어느 하나)
-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계속 수행 조치 가능(단,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확인·점검 필요)

○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법 제6조)

- (의무)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직무수행의 일시중지명령, 직무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 중 어느 하나)
-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계속 수행 조치 가능(단,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확인·점검 필요)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발생 기준 시점

- 신고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예시)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 개발업무 현황을 보고받는 등 사업 지구 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신고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 후 등기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시) 지자체장의 배우자가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 개발업무 관련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기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법 제9조)

- (의무)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야 함
-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치(직무수행의 일시중지명령, 직무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재배정, 전보 중 어느 하나) 또는 제7조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금지사항 (상시)

○ 가족 채용 제한(법 제11조)

- 공공기관은 소속기관·감독기관 고위공직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위공직자 등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안 됨

○ 수의계약 체결 제한(법 제12조)

- 공공기관은 소속기관·감독기관 고위공직자,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해당 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고위공직자 등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 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안 됨

○ 직무상 비밀등 이용 금지(법 제14조)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하게 하는 행위 및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예시)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행위

1. 제도 개요

- **(목적)** 민간전문가가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이후 공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필요
 - 고위공직자의 경우 중·하위공직자들에 비해 권한이 광범위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됨
 - ※ 특히, 민간에서 공직으로 진입하는 경우, 그간 민간영역에서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고위공직자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사항을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자기 검열기제로서 작용
 - 또한, 기관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함으로써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
 - 더불어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 감시기구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다각적 통제 가능
- **(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제출 의무

- **(제출 의무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

※ 「공직자윤리법」 상의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와 그 범위가 일치

- **(제출 사항)**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의 업무 활동 내역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 제출 사항
① 법인·단체에 재직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②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③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운법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에서의 활동은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 기한)** 임용일,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기한

- **(제출 대상)** 소속기관장

※ 기관장이 제출 의무자인 경우 소속기관(또는 보좌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 **(제출 방법)**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별지 작성 및 첨부자료 제출 가능

3. 제출 항목별 세부 내용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명칭 및 소재지) 법인·단체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작성
- (근무기간) 법인·단체에 재직하면서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을 작성
- (직위·직급) 재직 당시의 직위 및 직급을 작성
- (담당 업무) 해당 법인·단체의 업무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예시) OO전자는 반도체 개발 및 통신장비·휴대폰 등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본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이사로서 예산편성, 결산서 작성, 감사보고서 작성,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Q & A >

Q1.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범위는?

- A. · 「상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등이 해당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도 포함됨
- * 정부기관 등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은 단체로서 사고·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은 제외됨
- * 정당은 「정당법」에 근거한 비법인 사단(단체)으로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재직했던 법인·단체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할 필요(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가능)
- * 정당의 당직이 없는 당원, 협동조합의 조합원, 학회의 회원 등으로 활동한 것은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재직 여부는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 부문의 법인·단체는 제외됨

Q2. 직위 또는 직급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는지?

- A. · 임용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다면 직위·직급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함

2 대리, 고문·자문 활동

- (기관명) 임용 전 3년 이내에 대리했거나 고문·자문을 제공받은 기관의 정식 명칭(대리·고문·자문한 대상이 개인인 경우 성명)을 작성
 - ※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법인·단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는 작성 제외
- 개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서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소속하여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명 작성
 - ※ 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 법인의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고문·자문을 제공받은 제3자가 없으므로 소속 법인·단체명을 기재
- (활동기간) 기관 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기간을 작성
- (담당 업무) 해당 대리·고문·자문 제공 관련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위임장, 자문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Q & A >

Q1. 대리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 A. · “대리”란 타인(본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민법」상 “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대리행위는 직업이나 그 밖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행한 행위임
 - 변호사의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세무대리, 행정사의 신청·청구 등의 대리,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매에서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변리사의 특허 등에 관한 대리, 관세사의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공인노무사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 대리 등이 전형적인 대리에 해당함

Q2. 고문·자문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 A. · “고문”은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자문”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는 고문·자문 행위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환으로 타인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행위임
- 고문계약, 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고문, 자문위원,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의견 제시·조언하는 지위에 위촉·선정·채용되어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문·자문에 해당함

Q3. 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계약 행위가 없었음에도 대리,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A. 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인 계약행위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리, 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형태 등에 비추어 구두계약 또는 묵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리, 고문·자문 등을 수행했던 경우로 볼 수 있음

Q4. 개인변호사이거나 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로서 임용 전 3년 간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사안이 300건이 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명을 모두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A. 임용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민간 법인·단체의 기관명(개인인 경우 성명)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Q5. 법인·단체에 속하여 소속 법인·단체의 건축사, 회계사 등 임원 및 직원에게 일반적 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A. 소속된 법인·단체명을 작성하여 제출함. 지정변호사 등으로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을 담당한 사안이 아니라면 소속된 법인·단체가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까지 개인·법인·단체명을 작성·제출할 필요 없음

Q6. 법인에 재직하면서 그 법인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 어떤 항목에 작성해야 하는지?

A. 법인에 고문,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법인에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다면 해당 법인을 “재직정보(재직했던 법인·단체 등)” 항목과 “고문 및 자문활동(대리, 고문·자문 등)” 항목에 모두 작성해야 함

③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 (업체명 및 소재지) 관리·운영했던 업체의 정식 명칭과 소재지를 작성
- (근무기간) 사업 등을 관리·운영했던 기간을 작성
- (직위·직급) 사업 등을 관리·운영했던 당시의 직위 및 직급을 작성
- (담당 업무) 해당 업체의 업무 내용과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본인이 관리·운영했던 ○○○은 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허가를 받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음료를 판매·제공했던 업체임. 본인은 해당 업체의 사장으로서 음료 발주, 재고 관리, 업소 관리 등 카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음

- (첨부) 필요 시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Q & A >

Q1. 관리·운영의 의미는 무엇인지?

A. "관리·운영"이란 해당 사업 또는 영리행위에 관해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나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영리행위 전반에 대한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Q2. 대표자가 아닌 부회장·부사장 등 고위직이었던 경우가 관리·운영에 해당하는지?

A. 해당 사업체의 관리·처분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정도가 아닌 한 부회장·부사장 등 고위직에서 사업체의 일부 업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해당하지 않음

Q3. 단순히 자금 등을 관리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해당하는지?

A. 해당 사업 또는 영리행위에 관해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아니며 실질적인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자금 관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사업을 관리·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Q4.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A. 등록대상자가 비영리법인에서 지배권 및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관리·운영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Q5. 사업 또는 영리행위 등록대상 업체 등의 범위는?

A. 「상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등이 해당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단체도 포함됨
-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영업허가·영업신고 등을 한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함

4. 제출 내역 관리

- (보완 요청) 소속기관장*이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기록·관리) 공공기관의장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5. 제출 내역의 공개

- (공개 주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은 소속기관장
 - ※ 기관장의 제출 내역은 소속기관(보좌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개 결정 가능
- (공개 범위)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하였던 사업·영리행위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리·고문·자문했던 내역은 법령, 업무편람, 본 유의사항을 참조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하되, 다만 공개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공개
- *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비밀유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I-2



청탁금지법 주요 행위기준 및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주요 행위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요약

구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적용 대상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금지 내용	(법 제5조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한 부정청탁 금지 * 인·허가, 계약, 입학성적, 병역업무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사유	(법 제5조제2항) ·법령·기준에 따른 요구 ·공개적 요구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또는 진행 상황 문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요구 ·법령·절차 등에 대한 설명 요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법 제8조제3항)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의 가액범위 내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각종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사교·의례 등 목적 가액 범위 (시행령 [별표1])	·음 식 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경우 5만원까지 인정 ·선 물 : 원칙적으로 5만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원료의 50% 초과) 선물(화훼포함)의 경우 15만원까지 인정 (설·추석의 경우 30만원) ·경조사비 : 5만원(화환·조화 제공시 10만원까지 인정)	
외부강의등 (법 제10조, 시행령 [별표2])	·정 의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토론회·공청회,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신 고 : ①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②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반환 및 신고 *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 40만원(1회 최대 60만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 시간당 100만원	

□ 주요 행위기준 안내

1.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

- (내용) ①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②14가지 직무에 대하여 ③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④부정청탁(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 (대상직무) 인·허가, 과태료, 채용·승진 등 인사업무, 심의·의결, 수상, 입찰, 계약, 보조금, 입학·성적, 병역업무 등 14가지
 - (직무수행 공직자) 업무 담당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자(기관장) 모두가 포함
- (예외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음

부정청탁 예외사유(제5조제2항)

- 법령·기준에 따른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
-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또는 진행 상황 문의
-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요구
- 법령·절차 등에 대한 설명 요구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신고)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제재) 부정청탁을 한 자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모두 과태료·벌금·징계 등 제재대상이 됨

2. 금품 등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법 §8①)
 -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등 수수 금지(법 §8②)

- 다만, 일상적인 사회생활 보장 및 과도한 제한 소지 방지를 위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를 8가지로 구체화(법 §8③)

【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법 §8③)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화·동호인화·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2호) 가액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 되어야만 예외사유에 해당

- (판단기준) 수수자와 제공자와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 (목적이 부정된 사례)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 >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5만원 이하	축·조의금 5만원 이하 화환·조화 10만원 이하	5만원 이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이하 (설·추석명절 전 24일, 후 5일 기간 30만원 이하))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의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 * '경조사'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 ◆ 선물 : 금전·유가증권(물품 및 용역상품권 제외)·음식물·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 외부강의등 제한(청탁금지법 제10조)

- (외부강의) ①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②외부로부터 요청받은 ③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회의나 강의·강연·기고 등
- (내용) 공직자등은 외부강의에 대해 ①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②상한액 내에서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 (신고) 소속기관장에게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신고의무만 제외
(단, 기관 내부규정으로 신고의무를 두는 경우 별도로 준수 필요)
 - (사례금) 초과사례금 수수시 지체 없이 반환 및 신고해야 함

사례금 상한액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 40만원 (1회 최대 60만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 **시간당 100만원**

II-3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 및 유의사항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행위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국가공무원 제외 / 지방의회의원 제외

○ 위반 시 징계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제3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 (1차)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 : ①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 거부 또는 ②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2차)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 소속 기관장은 지시 취소/변경 및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특혜의 배제(제6조)

-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는 행위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

-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9조)

-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 개입 금지

○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0조의2)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 금지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 금지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특정인에게 투자 등 알선·청탁 금지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3조의3)

- 직무권한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허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4조의2)

-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독기관에게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또는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금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

-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조)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제한

○ 유의사항

-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가능하며, 이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과 소속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이 모두 적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지방의회의원
- 위반 시 징계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제3항)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5조)
 -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6조)
 -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 금지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7조)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등의 심의·의결 회피 의무
 - ※ 회피 대상 : ①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및 ②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8조)
 -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금지
 -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8조의2)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 금지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특정 개인에 투자하도록 개입하는 등 행위 금지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9조)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0조의2)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0조의3)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등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1조)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국내외 활동 제한 등(제13조)

-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 금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4조)

-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

○ 영리행위의 신고(제15조)

-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조)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성희롱 금지(제18조)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금지

○ 유의사항

- 지방의회별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소속 지방의회의 행동강령이 모두 적용

II-4



기타 안내사항

부패방지교육 이수 안내

□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 ★ '26. 12. 31까지 2시간 교육 필수

- (법적 근거 및 내용)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 공직자에게 매년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 부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이수 방법)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
 - 단, 고위공직자 및 신규승진자는 2시간 중 1시간은 반드시 대면 교육 필요
- (고위공직자의 범위) 기관 유형별 고위공직자 범위 상이
 - 선출직 공직자(지자체장 · 교육감 · 지방의원)는 모두 고위공직자에 해당

< 공공기관 유형별 고위공직자 범위 >

기관유형		고위 공직자 범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 기관장
지방자치단체	광역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 기관장
	기초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 기관장
지방의회	광역	지방의원 ,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 기관장
	기초	지방의원 ,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 기관장
교육청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기관장
공직유관단체		2개 이상의 부서를 총괄하는 직위 ~ 기관장
공공의료기관		(의사) 진료과장 이상 ~ 기관장, (직원) 공직유관단체 기준 적용
국·공립대학교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 기관장, (직원) 3급이상 등

- (부패방지교육 내용) 부패방지교육 인정 유형중 선택하여 자율 이수

< 부패방지교육 인정 유형 >

- ▶(법령·제도)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기관 청렴 시책)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 시책 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청렴 소양)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 교육 등

- (제출기한방법) 감사 부서에서 매년 12.31을 기준으로 실적 집계 후, 다음해 2월까지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실적 입력·제출

신고자등 비밀보장의무 안내

□ 신고자등 비밀보장의무

- (주요내용)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 (신고자등) 신고자와 협조자를 모두 보호하며, 협조자는 신고 및 신고자 보호조치의 조사 등에 진술·자료제출 등 협조한 사람을 의미
- (벌칙규정) 위반한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진정·제보 등의 형태인 일반민원이 국민신문고, 민원게시판 등을 통해 접수 되더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피신고자, 부패 또는 공익침해행위 등의 내용·증거 등이 제출되어 실질적으로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해당 민원은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기관 내 부패행위 등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고자등이 신고등으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보호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호 제도	주요내용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책임의 감면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위법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신분보장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 (주요내용) 비위면직자등은 취업제한기간(5년) 동안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금지(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 (비위면직자등)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였던 자
 - (취업제한기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부터 5년간, 형 선고 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 ※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등의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 (취업제한기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등 및 해당 업체가 속한 법인·단체(협회)
 - (취업의 의미) 근로계약에 따른 취업 뿐만 아니라 직책·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조언·자문을 하고 임금·봉급을 받는 경우도 해당
 - (벌칙규정) 위반한 비위면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비위면직자등의 경우 업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공공기관의 취업이 취업제한기간 내 금지되므로,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업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기관에 취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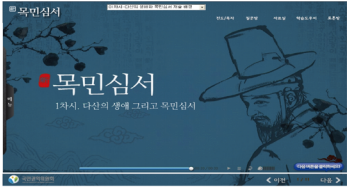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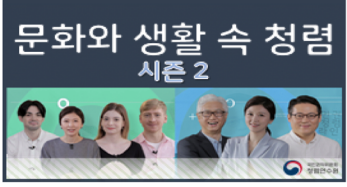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취업기관에 해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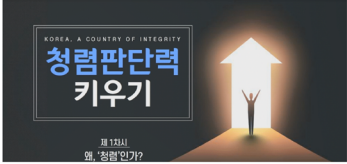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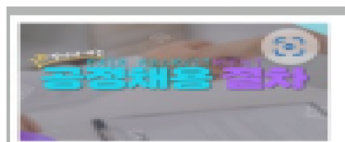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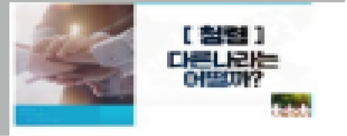
※ 교육일정은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일정은 매월 교육 신청 안내 공문을 통해 공지될 예정(미기재 교육과정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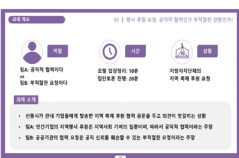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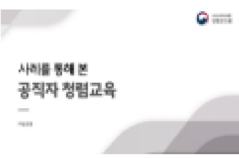
월	과 정 명	기수	교육인원	교육일자
9월	청렴윤리경영 최고관리자 과정	2기	40명	9.1.(화)
	행정심판 역량강화 과정	3기	100명	9.4.(금)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강화 과정	4기	40명	9.9.(수)~9.11.(금)
	계약담당자 부패대응역량 향상과정	2기	40명	9.8.(화)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정책·법령)	2기	50명	9.14.(월)~9.17.(목)
	찾아가는 권역별 권익·청렴교육(수도권)	3기	250명	9.16.(수)
	고위직 과정	6기	40명	9.18.(금)
	청렴윤리경영 기본과정	5기	40명	9.28.(월)~9.30.(수)
10월	집단·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과정 ^{하이브리드}	3기	300명	10.1.(목)
	AI·빅데이터 활용 민원처리실습 과정	1기	30명	10.1.(목)
	고위직 과정	7기	40명	10.7.(수)
	청렴윤리경영 심화과정	3기	40명	10.12.(월)~10.14.(수)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강화	5기	40명	10.14.(수)~10.16.(금)
	고위직 과정	8기	40명	10.20.(화)
	갈등조정담당관 역량 강화 기본과정	2기	100명	10.20.(화)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7기	40명	10.21.(수)~10.22.(목)
	집단갈등 문제해결 과정	1기	40명	10.27.(화)~10.28.(수)
	청렴리더십	2기	40명	10.28.(수)
	승진자 청렴교육	7기	40명	10.30.(금)
	청렴윤리경영 기본과정	6기	40명	11.2.(월)~11.4.(수)
11월	집단·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과정 ^{하이브리드}	4기	300명	11.6.(금)
	청렴감성지수 향상과정	4기	40명	11.4.(수)~11.6.(금)
	승진자 청렴교육	8기	40명	11.13.(금)
	권익구제·갈등관리 역량강화	6기	40명	11.11.(수)~11.13.(금)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강의역량향상)	2기	30명	11.17.(화)~11.18.(수)
	청렴권익의 이해	1기	80명	11.20.(금)
	청렴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5기	40명	11.24.(화)
	갈등조정담당관 역량 강화 기본과정	3기	100명	11.25.(수)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기본과정	8기	40명	11.26.(목)~11.27.(금)
	행정심판 역량강화	4기	100명	12.4.(금)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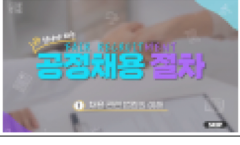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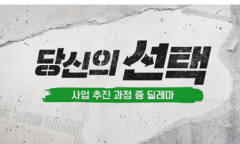
과정명	차시	인정시간	주요내용
<청렴 북 콘서트> 	5	1시간	인문학, 심리학 분야의 청렴 관련 필독서 내용 소개를 통해 청렴의 가치를 이해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7	3시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목민심서(청심, 병객, 절용, 절제)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 	8	3시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청렴하고 강직했던 일화를 통해 공직자가 지녀야 할 공직 윤리 확립 ※ 일반과정, 수어과정 별도 운영 ※ 수어과정은 일반 공직자도 수강 가능
<역사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10	3시간	각 지역의 청렴 사적지와 역사 속 일화를 현대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 청렴인식 확산 ※ 일반과정, 수어과정 별도 운영 ※ 수어과정은 일반 공직자도 수강 가능
<문화와 생활 속 청렴> 	2	2시간	역사, 영화 등 인문학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패방지 법령을 이해하여 생활 속 청렴을 실천
<문화와 생활 속 청렴 시즌 2> 	2	2시간	갑질 문화, 부패스캔들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의와 청렴 윤리에 대하여 재인식하고, 해외의 부패방지 법을 우리나라 법과 비교 학습하며 법령에 대한 입체적 이해도 제고

과정명	차시	인정시간	주요내용
<부패상황 자각하기> 	7	3시간	청렴이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사례 학습을 통해 청렴 역량 4구성 요소 중 '청렴민감성' 능력 제고
<부패앞에 단호해지기> 	8	4시간	부패와 의사소통, 부패를 예방하는 Key-communication, 대한민국의 반부패 관련법 숙지를 통해 부패를 단호히 배척할 수 있는 정신자세 확립
<청렴판단력 키우기> 	8	5시간	청렴 개념 및 청렴 4구성요소(민감성, 판단력, 동기화, 수행력) 이해 및 문제가 되는 상황 직면 시 청렴판단력 역량 제고
<청렴윤리경영의 이해> 	3	2시간	청렴윤리경영의 개념 등 이론과 관련 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설명함으로써 청렴 윤리 경영 문화 확산
<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4	2시간	경찰·소방·국방 등 현장직군 공직자들이 현업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업무 수행 중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사례 및 실무 Q&A를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조직 내 대처역량 강화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4	2시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법 이해도 제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일반과정, 수어과정 별도 운영 ※ 수어과정은 일반 공직자도 수강 가능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 	5	2시간	공공재정환수법 도입 배경 및 제정 의의, 부정청구등에 따른 제재 및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주요 질문 및 유권해석 사례를 통하여 법령의 이해도 제고

과정명	차시	인정시간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의 이해> 	6	3시간	청탁금지법 도입배경 및 제정의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법령 내용으로 구성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제고 ※ 일반과정, 수어과정 별도 운영 ※ 수어과정은 일반 공직자도 수강 가능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8	3시간	공익신고자 인터뷰, 실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익신고의 중요성 및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의 역할 인지
<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 	4	2시간	채용 업무 진행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절차와 지침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절차 이해도 제고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7	4시간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과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관련 사례를 통해 알게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 및 공직사회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15	6시간	공직자 기본윤리,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청탁금지법,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공익신고 보호제도 등을 통해 반부패 관련 정책 및 법규 이해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7	3시간	청탁금지법 사례 학습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체적 이해도 제고 ※ 일반과정, 수어과정 별도 운영 ※ 수어과정은 일반 공직자도 수강 가능

과정명	차시	인정시간	주요내용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10	5시간	부패영향평가의 평가기준별 사례 학습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각급 기관에서 법령안 작성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 내재 여부를 자체 진단할 수 있는 법제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권익구제와 옴부즈만> 	10	4시간	고충민원 처리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의 내실화에 기여
<행정심판 실무 입문> 	6	3시간	행정심판 제도와 재결례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익구제 도모
<청렴, 다른 나라는 어떨까> 	2	2시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고,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부패 이슈를 알아보며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
<사례로 보는 집단·특이민원 대응 실무> 	4	2시간	집단·특이민원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효율적인 갈등 조정·민원 해결 능력 함양

연번	주요 내용	개발
1	 <조선 청백리를 통해 배우는 청렴강령> - 영상물 - 역사 속 청렴 인물과 주요 일화, 현대적 의미를 서경석 권익위 홍보대사가 해설해 주는 정보와 재미를 결합한 교육용 영상물	'25년
2	 <청렴밴드가 부르는 청렴송 뮤직비디오> - 영상물 - 청렴콘텐츠 공모전 노래 부문 수상작을 편곡하여 신나는 밴드 공연과 노래로 청렴 메시지 전달	'25년
3	 <청렴 영상툰> - 영상물 - 청렴콘텐츠 공모전 문학·로고송 부문 수상작을 생생한 영상툰으로 재구성하여 청렴 문화 확산	'25년
4	 <청렴리더십 프로그램> - 강의자료 - 변화된 환경·역할에 따른 공직자의 청렴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할극·집단토론 등의 방식으로 프로그램 (4차시) 구성	'25년
5	 <대학생 청렴교육 표준강의안> - 강의자료 -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을 위해 청렴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 청렴 실천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표준강의안 (15차시) 구성	'25년
6	 <청렴의 나무, 함께 가꾸요> - 강의자료 - 초등학교에서 자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로, 사례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8종의 표준 강의안(각 2차시) 및 활용 안내 영상 제공	'25년
7	 <지원쌤의 청렴 조회시간> - 영상물 - 초등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로 청렴 6덕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미래세대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 도모	'25년
8	 <청렴채널 ①> - 영상물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반부패 관련 주제를 이용해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와 재미를 결합한 교육용 영상물	'24년
9	 <교육 대상별 맞춤형 표준강의안 및 강사용지도서> - 강의자료 - 반부패 법령 교육(각 1종)과 더불어서 경찰·교직원·연구원 등 교육수요가 높은 직종 대상 맞춤형 사례 (각 6종) 구성	'24년

연번	주요 내용		개별
10		<청렴 종합병원> - 영상물 -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다양한 에피소드로 각색하여 법령 이해도 제고	'23년
11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 영상물 -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를 시트콤 형식으로 표현하여 일상 속 청렴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23년
12		<매너가 오피스를 만든다> - 영상물 - 직장 내 부패 유형인 '갑질' 사례를 다룬 브이로그(V-log) 형태의 영상물을 통해 갑질 근절 필요성 강조	'23년
13		<꼭 알아야 하는 공정채용 절차> - 이러닝 - 채용 관련 법령 및 채용 절차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여 공정채용 문화 확산	'23년
14		<청렴윤리경영의 이해> - 이러닝 - 청렴윤리경영의 정의와 배경, 국내외 동향 등 전반적인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	'23년
15		<청렴윤리경영 주요 사례 영상> - 영상물 - 청렴윤리경영의 등장배경, CP 등 기본 개념과 국내외 주요 사례를 캐릭터와의 대화 형식 등으로 풀어내어 흥미 유발	'23년
16		<청렴윤리경영 토론학습용 영상> - 영상물 -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을 단막극 형식으로 흥미롭게 구성해 토론학습의 몰입도 제고	'23년
17		<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 이러닝 - 경찰·소방·교정공무원, 군인 등 현장공직자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22년
18		<이해충돌방지법 탐구생활> - 영상물 -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인 10개 행위 기준을 에피소드를 통해 쉽게 설명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	'22년
19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 ①, ②> - 영상물 - 이름도 비슷하고 인접한 두 국가(파라과이, 우루과이)의 청렴도가 크게 차이 나는 원인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 설명	'22년
20		<부패로 큰코다친 나라들, 뇌물과 부패방지법> - 영상물 - 나라를 뒤흔든 세계 각국의 희대의 부패사건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해외의 반부패 입법 사례 소개	'22년

붙임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반부패 법·제도 강화로 공직사회 체질 개선			
[1] 청탁금지제도 규범력 제고			
①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성과·우수사례, 청탁금지법 홍보 자료 배포시 정책고객·SNS 등을 통한 확산·배포 협조	수시	전 공공기관
[2] 이해충돌방지제도 내실화로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①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조사 자료 제출 협조	8월	전 공공기관
②	이해충돌 방지제도 자체점검 실적 제출 협조	10월	해당기관
③	이해충돌방지법 법정 의무 교육 이행	연내	전 공공기관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①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제·개정사항 제출	제·개정 완료시	전 공공기관
②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조사, 행동강령 실태점검시 자료 제출·현지점검 등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연중	전 공공기관
[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 활용	상시	전 공공기관
②	취업제한제도 즉시 안내 및 대장 관리	수시	전 공공기관
③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현황 입력기한 준수	~8월	전 공공기관
[5]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 고도화 추진			
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 개최시 적극 참여	3분기	해당기관
②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관련 교육영상 배포시 기관별 정책고객·이해관계자·SNS 등을 통한 확산·배포 협조	4분기	해당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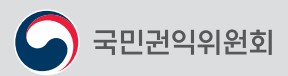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6] 지방정부 신고포상금 제도 정비 및 활성화			
①	자체 사전검증 후 권익위 포상금 대상자 적극 추천	9월	전 공공기관
②	신고포상금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소관 신고포상금 제도 정비	하반기	전 지방정부·교육청
2.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관행 근절			
[1]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강화			
①	비공무원 채용 자체감사 실시	~9월	중앙·지자체·교육청
②	산하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회신	~10.23	감독기관
③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협조	상시	해당기관
[2] 제도개선을 통한 불공정·고충 유발 요인 해소			
①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조회 등 협조	연중	전 기관
②	권고과제 조치기한 도래 후 1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	연중	전 기관
③	기관평가 시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 제출 등 협조	9~11월	전 기관
③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점검 등 협조	연중	전 기관
3.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문화 확산			
[1]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한 청렴수준 향상 촉진			
①	설문조사 명부, 부패사건 징계자료 등 보완	9~11월	평가대상기관
②	하반기 현지점검 협조	9~11월	평가대상기관
③	'26년도 청렴노력도 실적 제출	9.30~10.2	평가대상기관
④	'26년도 청렴노력도 정량지표 1차평가 이의신청	11월초 예정	평가대상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⑤	부패사건, 언론보도 사항 등 확인·소명	~11월	평가대상기관
⑥	기관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12월	평가대상기관
⑦	'27년도 청렴컨설팅 희망 및 수요조사	종합청렴도 결과발표 직후	'27년도 평가대상기관
[2] 공직자 교육 수요를 반영한 부패방지교육			
①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집합교육 안내 및 홍보 요청	~12월	전 공공기관
②	교육생에 대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 파견 등 협조 요청	~12월	전 공공기관
③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방문교육 운영 시 시설 준비 등 협조 요청	수시 (별도통보)	해당 기관
④	자체 청렴교육 운영 시 청렴교육 강사 활용 요청	상시	전 공공기관
⑤	자체 청렴교육 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콘텐츠 활용 요청	상시	전 공공기관
⑥	부패방지교육 대상별* 교육 운영 및 관리 *전체공직자, 고위공직자, 신규·승진자	~12월	전 공공기관
[3] 청렴윤리경영 및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지원			
①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운영 등 자율실천	수시	희망기관
②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간담회 적극 참여 및 우수사례 발굴 협조	수시	전 공공기관
③	청렴시민감사관 맞춤형 컨설팅 수요 제출	수시	해당 기관
[4] 반부패 수공 유공자 포상			
①	소속 기관·단체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기한(11월말) 내 추천	11월	전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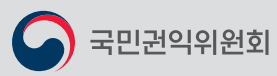
부 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정책 총괄과	김종혁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관리 청렴도 부진기관 청렴컨설팅 운영	044)200-7616	044) 200-7939
	김보배		044)200-7619	
	정유민	반부패 수공 유공자 포상	044_200-7618	
청렴조사 평가과	백현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044)200-7633	044) 200-7940
	강경의		044)200-7632	
	연나영		044)200-7636	
	박세아		044)200-7634	
	김동훈		044)200-7638	
	김선미		044)200-7635	
	박혜랑		044)200-7637	
	권택경		044)200-7629	
	윤종선		044)200-7639	
청탁금지 제도과	박소형	청탁금지제도 업무 총괄	044)200-7703	044) 200-7944
	이경민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044)200-7704	
	이종호		044)200-7702	
	허서연		044)200-7713	
	박선미	청탁금지법 실태점검, 교육, 홍보	044)200-7706	
행동강령과	문호준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5	044) 200-7942
	최우석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200-7670	
	박종완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위반자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입력	044)200-7685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채용비리 통합신고 센터	이준민	채용실태 전수조사, 제도개선	044)200-7127	044) 200-7964
	이창민	채용실태 전수조사, 교육, 컨설팅	044)200-7711	
	주명진	채용비리 신고 상담, 조사·처리	044)200-7710	
	모형오	채용비리 신고 상담, 조사·처리	044)200-7291	
이해충돌 방지팀	이예정	국정과제, 제도 운영·기획	044)200-7674	044) 200-7963
	변희정	교육·홍보, 실태조사, 설명회, 유권해석	044)200-7679	
	박주완	교육·홍보, 운영지원, 유권해석	044)200-7621	
심사기획과	이동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0	044) 200-7943
	권정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200-7696	
보호보상 정책	방경아	보호·보상 관련 법·제도 운영	044)200-7752	044) 200-7948
	문성호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운영 공익지보지원위원회 운영기관 협의회	044)200-7753	
	서지만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교육·홍보	044)200-7754	
부패신고자 보호과	한세근	부패신고자 보호사건 업무 총괄	044)200-7777	044) 200-7949
공익신고자 보호과	김옥희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업무 총괄	044)200-7333	044) 200-7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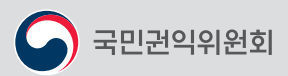
부 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신고자 보상과	우명희	권익위 포상금 대상자 추천	044)200-7739	044) 200-7947
	이진희	신고포상금 표준 조례안 배포	044)200-7745	
	권영훈	신고포상금 표준 조례안 배포	044)200-7415	
민간협력 담당관실	이유경	청렴윤리경영 CP 제도 운영	044)200-7164	044) 200-7917
	우은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044)200-7160	
제도개선 총괄과	김유정	제도개선 업무 총괄	044)200-7212	044) 200-7921
	한수지	제도개선 권고 이행관리 총괄	044)200-7210	
	김명혜	제도개선 권고 이행관리 지원	044)200-7219	
국가청렴 권익교육원	김하진	고위직 과정, 지방의회 청렴연수 과정, 청렴리더십 과정 교육 운영	043)901-6130	044) 200-6973
	장보정	집단갈등 문제해결 과정 교육 운영 및 콘텐츠 기획·개발	043)901-6131	
	조효민	청렴Live, 내부강사 양성과정, 청렴 Live 콘텐츠 기획·개발 운영	043)901-6145	
	서정민	신규자 과정, 청렴역량 심화 과정 등 교육 운영	043)901-6133	
	나은정	승진자, AI·데이터 활용 청렴·민원처리 교육, 찾아가는 권역별 권익·청렴 교육, 권익의 이해 운영	043)901-6143	
	김성래	전문강사 양성, 전문강사 보수교육 운영	043)901-6134	
	김유현	청렴감성지수, 계약담당자, 갈등조정 담당관 과정 교육 운영	043)901-6149	
	안민형	권익구제·갈등관리 과정, 집단·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과정, 행정심판 과정 운영	043)901-6121	
	이승은	사회초년생 청렴교육 운영	043)901-6163	
	신영훈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043)901-6162	
	전현교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043)901-6153	
	김지환	이러닝 교육 과정 운영	043)901-614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